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19 - 315 호

민방위기본법위반 과태료부과처분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

민방위기본법 제23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민방위기본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에 따라 민방위기본법위반과태료 부과처분에 앞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(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)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,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
2019년 3월 29일

광 진 구 청 장 

1. 제　　목 : 민방위기본법위반 과태료부과처분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
2. 대　　상 : 황*건 외 154명 (붙임 명단 참조)
3. 공고기간 : 2019. 4. 2.(화) ~ 4. 15.(월), 14일간
4. 처분의 원인 : 민방위기본법 제23조 위반(2018년도 민방위 교육·훈련 불참)
5. 공시송달 내용
   가. 민방위기본법위반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당사자는 공고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,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행정처분(과태료 부과)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.
   나. 의견제출 기한까지 자진납부 시 질서위반규제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금액을 20% 감경 받을 수 있으며,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청 도시안전과 민방위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 (전화 02-450-7258 / 팩스 02-3425-1704)

붙임　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1부.